※ 2024년 도시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사업별 중복신청 및 지원불가
- 도시제조업 경쟁력 강화: ① 맞춤형패키지 지원, ② 제조공정디지털화 지원

2024년 도시형소공인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 소재 도시형소공인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도 도시형소공인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 4. 24.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도 도시형소공인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서울지역 도시형소공인 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주관기관+협력기관)

형태	내용
단독	○ **지원자격:** 서울지역 5대 업종 도시형소공인 기업 ✓ 사업자등록기준 서울시 소재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5대 특화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의류봉제(C13, C14), 수제화(C15), 인쇄(C18), 기계금속(C24, C25, C29), 주얼리(C33) ✓ (신청일 기준) '휴폐업/부도, 세금체납,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컨소시엄	○ **컨소시엄: 주관기관 + 협력기관** - **주관기관:** 서울지역 5대 업종 도시형소공인 기업 ✓ 사업자등록기준 서울시 소재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5대 특화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의류봉제(C13, C14), 수제화(C15), 인쇄(C18), 기계금속(C24, C25, C29), 주얼리(C33) ✓ (신청일 기준) '휴폐업/부도, 세금체납,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협력기관** • 서울지역 도시형 소공인 기업(협력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업종코드는 C10~C34에 해당되면 됨) • 서울지역 대학, 연구소, 도시형소공인 관련 협단체 등 포함

구분	주관기관		협력기관(자율)		예 시
예시 ①	서울 소재 5대업종 도시형소공인	+	서울소재 소공인 기업/ 협·단체 등	☞	a. A기업 + B기업(자율) b. A기업 + C단체(자율) c. A기업 + B기업 + C단체(자율)

□ **기관별 역할**

전담기관 (서울경제진흥원)		주관기관 (5대업종 소공인기업)		협력기관 (소공인 기업+협/단체 등)
가. 총괄기획 및 과제선정 나. 타 기관 협업지원 및 성과관리 다. 우수성과 홍보기획 및 운영	+	가. 과제 계획 및 수행 나. 사업수행 및 성과도출	+	가. 과제 협업 및 행정 지원 등 협력 나. 수행 및 사후성과관리 협력

□ **지원과제: 기술개발형 시제품 제작비용, 제품 기능개선 등 고도화 과제(1개사(컨소시엄)당 1개 과제)**

- 제품·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등 제작지원
- 제품·기술 품질향상 및 기능개선 관련 공정기술, 제조기술 개선 등 고도화지원

□ **지원규모:** 총 480백만원(총 24개 과제)

○ 자부담: 지원금의 10% 이상(민간현금), 자부담 현금 미입금 시 선정 및 지원 취소

구 분	지원기업수	지원예산
기술고도화	24개사	480,000천원 (20,000천원 X 24개사)

□ **지원기간:** 2024. 5월 ~ 11월

□ **지원내용:** 기술(제품) 개발, 기능개선 고도화 과제 추진 관련 사업비,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사업비 70%, 인건비 등 운영비 30%

비목	세부비목	편 성 기 준	비율
사업비	장비·재료비	• 과제 수행관련 연구기기, 장비의 임차사용 경비 ※ 설비/장비 구입은 불가 • 과제 수행관련 재료 구입 등 재료비	70%
	기술서비스 활용비	• 과제 수행관련 외부전문가 비용(컨설팅, 자문비용) • 과제 수행관련 시험분석비, 시제품 제작비, 인증획득관련 비용 등 • 과제 수행관련 지식재산권 출원비	
운영비	인건비	• 주관 또는 협력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4대보험 가입자)	30%
	기타 운영비	• 회의비, 국내여비, 회계정산수수료, 지급이행보증보험료 등 운영경비 ▸(회의비) 1인 1회 1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편성 ▸(국내여비) 시내출장비는 1인당 월 150천원, 일 2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2만원), 4시간 미만(1만원)을 지급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은 지원금액에서 제외

○ 사업비 지급

- 1차: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지급(총 지원금 70%)
  ☞ 협약기업 1차 지원금의 10% 자부담 입금 확인 후 사업비 지급
- 2차: 모니터링 후 14일 이내 지급(9월~10월/ 지원금 30%)
  ☞ 협약기업 2차 지원금의 10% 자부담 입금 확인 후 사업비 지급
- 협약체결시 총예산(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 제출 ※ 별도 지원금 통장개설 및 관리

□ **주요일정(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모집공고	② 선정평가	③ 협약체결	④ 사업수행	⑤ 최종평가 및 정산
• 모집 및 홍보	• 지원과제 선정	• 최종계획서 수정보완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기업별 사업추진 •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최종성과 평가 • 사업비 정산
~ '24.5.7.(화)	5.16.(목)~5.17.(금)	5.20.(월) ~ 5.24.(금)	~'24.11.29.(금)	'24. 12월

2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모집기간:** 2024. 4. 24.(수) ~ 2024. 5. 7.(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온라인 신청 방법】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sba.seoul.kr/ 방문 ▶ 기업회원(가입 후)로그인 ▶ '사업신청' 메뉴 클릭 ▶ '접수 중인 사업' 목록에서 '2024년도 도시형소공인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공고' 클릭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및 제출(용량 30MB 제한, zip 파일로 업로드)

※ 신청서 파일명은 '24년 기술고도화_기관명'으로 저장 ex) '24년 기술고도화_(주)서울

※ 파일용량이 초과하여 업로드가 안 될 시 별도 이메일로 제출(yipark@sba.seoul.kr)

□ **신청서류:**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시 업로드 ※ 유효기간 확인 필수

제출서류	비 고
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별첨의 서식1 양식참고
② 사업계획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의 서식2, 3 양식참고
③ 확약서(신청기업용)	별첨의 서식 4 양식참고
④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접수기간 내 유효서류 限
⑤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⑥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⑦ 사업자업종코드(국세청 또는 통계청)	

※ 각종 서류 출력 방법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applyCertificate) 〉 증명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사업자등록증명' 검색
- 국세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지방세 납세증명' 검색
- 사업자업종코드(국세청):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검색
- 사업자업종코드(통계청): 근로복지공단(https://total.comwel.or.kr/) 〉 정보조회 〉 사업장총괄카드조회(20101)

3 선정 및 평가방법

□ **사전검토:** 신청자격 적정 여부, 평가대상 제외여부 등 사전 검토

※ 평가대상 제외

○ 접수마감일까지 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 완료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타 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이 된 이후에도 동 과제가 서울경제진흥원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기업 지원사업 등에서 중복성이 인정되면, 선정 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되었거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인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제재조치 대상일 경우

○ 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평가:** 외부 전문 평가위원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분야 외부 전문 평가위원 7인 이내 구성

- 참여기관(주관기관, 협력기관)과 동일이관 소속한 위원 배제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나 비밀유지 위반 등으로 평가위원의 자격에 제한을 받은 자 배제

○ 선정기준: 종합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에 따라 24개사 선정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에 가점을 더하여 계산
-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 계획 적정성(20) 〉 기대효과(15) 〉 목표적합성(10) 〉 지원필요성(20) 〉 실현가능성(10) 〉 사업비 적정성(10)

○ 평가기준

구 분	항 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술 역량 강화	지원 필요성(20)	- 지원사업 목적 부합성, 과제 지원의 필요성	20
	목표 적합성(10)	- 목표의 명확성	10
	실현 가능성(10)	- 목표 달성 가능성	10
	계획 적정성(20)	-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차별성	20
	기업경쟁력(15)	- 기업이 개발 및 제작한 제품의 기술 · 역량 등의 우수성	15
	기대효과(15)	- 기술(제품) 개선 또는 사업화 가능성,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15
	사업비 적정성(10)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10
	가 점	- '23년 R&D형 기술고도화 사업 최종평가 '성공(우수)기업'	(+2)
	합 계		100

□ **최종 선정기업 발표:**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기업별 안내 예정(협약 및 사업비 지급: 5월 예정)

4 문의처

□ 서울경제진흥원 뷰티패션제조팀 박영일 책임(02-6417-3702 / yipark@sba.seoul.kr)

5 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착오,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②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포기로 간주될 수 있음

④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⑤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별도 사업비 통장에 민간부담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함

⑥ 협약체결 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 및 지원 취소

⑦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 검토

⑧ 사업비 지급 불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유흥성 경비, 후원비성 경비, 자산취득비용 등
-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대출원금, 대출이자 등
-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기타 간접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등
-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항목

⑨ 지원금 사업 부정해위 근절을 위한 확약서 징구

- 사업계획 대리작성, 명의도용, 허위 작성, 대리 발표 등 지원 과정에서 위반사항 발견 시 지원금 환수 및 서울경제진흥원 모든 사업데 대해 **최대 5년간 참여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관계법령 및 진흥원의 지침 등에 따라 추가 제재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